

학 생 준 칙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학 생 준 칙

제 1 장 학생증

- 제1조** 입학(편입학)이 허가된 학생은 학생처에 학생증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제2조** 발급된 학생증은 졸업할 때까지 유효하다.
- 제3조** 학생은 교내·외를 막론하고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한다.
- 제4조** 학생증은 학생신분을 밝히는 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5조** 학생증 및 교표를 분실, 훼손하였을 때는 소정의 양식에 그 사유를 밝혀 재발급 신청을 학생처에 하여야 하며 재발급시에는 소정의 발급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6조** <삭제>

제 2 장 학생활동

- 제7조** 학생단체는 총학생회 산하 부서에 소속되어야 하며 별도의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8조** 학생단체 또는 학생은 총학생회 운영규칙 제4조에 명시된 임무 및 교육목적 이외의 활동은 할 수 없다.
- 제9조** 학생단체의 등록은 소정의 서식에 의거 지도교수를 경유, 학생처에 제출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10조**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교내·외에서 10인 이상의 집회 또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서식에 그 사유를 명백히 기재하여 학생처장을 경유,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11조**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호 1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1. 교내·외 게시물 게시
 2. 유인물 및 각종 자료의 배부
 3. 외부 인사의 교내·외 초청
 4. 교외활동 참여
- 제12조** 모든 집회 및 행사 허가원은 행사일의 3일 전까지 학부(과)장 또는 지도교수를 경유,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3조** 학생단체는 임원 개선이나 회칙을 개정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결과를 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4조** 학생단체의 책임자는 매 학년초 당해 단체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 1과 같다.
1. 회 칙

2. 활동계획서
3. 전년도 활동실적
4. 회원명부 및 대표학생 신상기록부

제15조 학생은 학생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직활동 등 수업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.

제16조 학생단체의 운영재정은 회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3 장 복장 및 주소변경

제17조 학생은 그 신분에 맞는 복장을 하고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한다.

제18조 학생 및 보호자의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지도교수와 학생처에 신고 하여야 한다.

부 칙

1. 이 준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2. (시행일) 이 준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준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